



# 2006년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은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들 제도를 잘 챙기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2006 새해 달라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봤다.

## ■ 세제 · 부동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종교기관 등 기부금 항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별



도로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02-739-8028).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근로자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살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올해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재정부 소득세과 02-2110-2168).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 토지 · 주택 매매

시 실제거래가격으로 시 · 군 ·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했을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교부 토지관리팀 02-2110-8156).

- **취득·등록세 인하** =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현행 집값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내려간다(행자부 지방세제팀 02-2100-3920).
-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지가(시가가 아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도 70%(현행 50%)로 올라간다. 종부세를 포함해 7억원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286만원(올해 231만원) 정도다(재경부 부동산 실무기획단 02-2110-2933).
- **실수요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약속하고 사후에 실제 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 02-2110-2497).

## ■ 금융·증권

- **새 5,000원권 발행** = 한국은행은 위·변조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2일부터 발행
- **돈세탁 방지 강화** = 1월 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

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이나 2,000만원(미화의 경우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된다.

- **방카슈랑스 확대** = 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이 판매 허용된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 = 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잘못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3786-8224).

## ■ 교육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상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현재 8만1천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어난



다. 만 3~4살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된다(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 **주 5일 수업 월 2회로 확대**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연간 수업시수도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안에서 감축 운영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시수는 줄지 않는다(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 **학생 건강검사 방법 변경** = 매년 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전체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폐지되고 3년마다 한 차례씩 학교가 선정한 외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6).

•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 = 편입학 실시 횟수가 1년에 2차례(전기와 후기)에서 1차례(전기)로 줄어든다. 편입학 인원 산정도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8등급으로 차등 적용된다(교육부 대학학무과 02-2100-6515).

### ■ 행정·법무

• **통합도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 시행된다. 이전의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통합되고, 화의제도는 사라진다. 국제 도산절차도 신설돼 외국에서도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출소자에게는 2년 동안 임대주택을 낮은 값에 공급한다(법무부 관리과 02-503-7088).

• **범죄 피해자 구조법 개정** = 개정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6월부터 시행돼 범죄 피해자가 숨지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되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수입에 따른 생계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범죄 피해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법무부 검찰2과 02-503-7052).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 =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따라야 한다. 법학과목을 이수한 서류 및 영어성적표를 미리 제출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인터넷으로 사법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02-507-0485).

• **주민소송제 실시** = 자치단체의 공금 지출, 재산취득, 관리, 처분 등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행자부 자치제도팀 02-2100-3755).

-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실시** = 그동안 무급 봉사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월정수당 등을 정하게 된다(행자부 자치제도팀 02-2100-3762).
- 경찰서 이름·관할 변경** = 3월 1일부터 '1구 1경찰서' 원칙에 맞춰 15개 경찰서의 이름이 바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청량리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로, 부산 연산경찰서는 '연제경찰서'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와 구로경찰서가 관할하던 영등포구의 일부 동은 모두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되는 등 41개 경찰서의 관할도 조정된다(경찰청 경무기획과 02-313-7835).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방법·기초질서·교통 등의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제가 2007년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

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경찰청 자치경찰팀 02-364-1940).

## ■ 정보통신

### • 이동전화 단말기 보

**조금 허용** = 지금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내년 4



월부터는 가입한 지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바뀐다. 와이브로와 비동기 IMT-2000 이동통신 단말기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신, 보조금 지급 상한액이 출고가의 40%로 제한된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 **휴대전화 번호 안내** = 지금까지는 시내전화 번호만 안내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 2월부터는 이동전화도 본인이 동의한 번호에 한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확대** = 내년부터 기존 이동전화와 비동기 IMT-2000(WCDMA) 이동통신 사이에도 번호유지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이동전화 가입자가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IMT-2000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 **에스케이텔레콤 발신자전화번호표시 무료화** = 에스케이텔레콤이 월 1천원씩 받던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무

료화한다. 하지만 무료화 뒤에도 이용하려면 가입해야 한다. 월 1천원씩 받는 케이티에프와 2천원씩 받는 엘지텔레콤은 아직 무료화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 **불법 스팸 발송자 처벌 강화** = 내년부터 스팸 메일·문자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02-750-1261).

## ■ 의료·복지

- **긴급 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조사·심사.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에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로 이상으로 완화. 이 조치로 빈곤층 11만6천명 가량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 **건강보험료 3.9% 인상** =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



에서 131.4원으로 각각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3.9%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전체진료비의 50%에서 20%로 크게 경감된다. 나머지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 ■ 국방·병무

- **사병봉급 인상** = 4만6600원인 상병 봉급이 2006년부터 6만5천원으로 오른다. 병장과 일병은 각각 7만2천원, 5만8900원으로, 이병은 5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사병 식단에 잡곡밥, 주꾸미, 황태찜, 황태채무침이 새로 추가된다. 돈가스도 세절육에서 순살코기로, 소시지도 돈육함량 34%에서 돈육함량 70%로 향상된다.
-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 1월부터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본인이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쌍용훈련의 경우 1, 3군지역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훈련기간이 줄어든다. 불시에 실시되던 향방작계훈련도 1월부터는 사전 계획을 수립해 충분한 예고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휴일 예비군 훈련부대도 2개 부대에서 30개 부대로 확대된다.



## ■ 노동

- **1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제** =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주5일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다만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올해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전해준다. 수혜 대상은 2006~2007년에는 최소 57살, 2008년에는 최소 58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살 이상의 노동자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 1 안에서 월 50만원이 한도다. 하지만 임금 삭감 뒤 연봉이 4,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 1962년 도입된 '근로자 채용 건강진단제도'가 44년 만인 올해 1월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입사시험에 합격하고도 'B형 간염' 보균자나 고혈압 등 뇌심혈관 질환 유발 요인 때문에 뒤늦게 낙방하는 사례가 없어진다(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504-2054).
- **유산·사산 보호휴가 신설** = 고용보험을 통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어난다.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했을

때도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유산·사산한 여성은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쓸 수 있다(노동부 여성고용팀 02-502-5441).

## ■ 기타

- **출국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현행 미화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상향조정된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 **전기요금 1.9% 인상** = 전기요금이 전체 평균 1.9% 오른다. 그러나 학교 등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대폭 내린다. 200kW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201kW 이상 사용하는 주택은 현행보다 1.8% 오르고, 특히 심야전력은 12월 28일부터 5% 오른데 이어 올해 7월부터 4.7% 추가 인상되는 등 큰 폭으로 오른다(산자부 전기위원회 02-2110-5544).
- **주유중 엔진 안 끄면 과태료 50만원** = 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 엔진을 정지시킨 뒤 휘발유 등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 부과된다(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 2100-5294).